
한화시스템(주)

공정거래 자율준수 핵심 편람

[2025년 7월 제정版]

01

공정거래법

02

하도급법

03

CP 제보 안내

대표이사 제정사

한화시스템 임직원 여러분,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지침서이자 교과서로서 2022년 최초 제정 되었으며, 이후 매년 변화하는 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회사와 관련있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기에, 그 분량이나 활용도 면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쉬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점을 개선하여,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쉽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성도 가장 높다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내용과 주요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핵심 편람’을 새로이 제정하여 배포합니다.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핵심 편람이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7월 **일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재 일



01

핵심 공정거래법

1-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3 부당지원·통행세 행위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1-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해설

공정거래법 제40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 ***p~***p참조

- ▶ ▶ **[부당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 가격, 물량,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 거래지역 등의 제한을 합의하는 것
 - **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 짬짜미 등의 명칭으로 알려짐
 - 성립요건: ‘둘이상의사업자가공동으로’ + ‘합의가 있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일 것’
 - 금지되는 부당 공동행위 유형
 - ① 가격결정 ② 거래조건 결정 ③ 생산·출고 등 제한 ④ 거래 지역·상대방·제한 ⑤ 설비제한
 - ⑥ 종류·규격 제한 ⑦ 조인트벤처 제한 ⑧ 입찰담합 ⑨ 타사업자 방해, 정보교환 담합
- ▶ ▶ **위반 시 제재**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리니언시)**
 -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구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자진신고자 (조사개시 전)	1순위	면제	면제	면제
	2순위	감경	50% 감경	면제
조사협조자 (조사개시 후)	1순위	감경 또는 면제	면제	면제
	2순위	감경	50% 감경	면제

1-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제재 사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정위] 과학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사업자제재('25.01.22.)

과학기자재 제조, 납품하는 3개 사업자가 7년간 총 89건의 공공기관 발주 입찰 참가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1.52억원 부과

[공정위] 20개 시스템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 제재('25.02.14.)

20개 가구사가 총 190건의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183억원 부과하고, 4개사 고발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25.03.12.)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 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원 부과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3.31.)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판매가격 공동 인상 합의, 실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원 부과

[공정위] 대구 경북지역 9개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4.03.)

대구 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5억원 부과

[공정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06.17.)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약 6년간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0.7억 원 부과

1-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해설

공정거래법 제45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 ***p~***p참조

▶ ▶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에 제1항 각호(제9호 부당지원 행위 제외)에 규정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④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⑥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⑦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⑧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⑨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위반시 제재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④ 부당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 남용, ⑧ 사업활동 방해)

▶ ▶ 기타: 안전지대

- 사업자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거래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경쟁제한성 위주 심사 유형만 적용

1-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재 사례

공정거래법 제45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검찰청]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유인) 사건 수사결과 (25.05.01.)

공정위 고발 건 관련 쿠팡 및 자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해당 2개사 불구속 기소. 쿠팡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직매입 상품 및 PB상품은 실제 순위를 무시한 채 검색시 랭킹 상위에 고정 배치하고, 검색순위 산정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음을 확인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쿠팡 내부 자료〉

○ 배경: ...(중략)... 인위적인 부스팅으로 인해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Product Promotion은 올해 기점으로 종료를 목표로 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랭킹 로직을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랭킹으로 올리다 보니 많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최종적으로 프로모션의 지원 대신 검색 로직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신규 등록되는 PL상품들이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의 상위 랭킹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장/단기적 솔루션을 고안한다. 단기적으로는 노출될 검색어와 SRP 랭킹을 매뉴얼로 지정하여 PL상품의 랭킹을 부스팅한다. 장기적으로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타이틀, 서치태그, 브랜드, iCateTag)를 활용하여 노출된 검색어와 SRP 랭킹까지 자동화한다.

* SRP: Search Result Page(검색 순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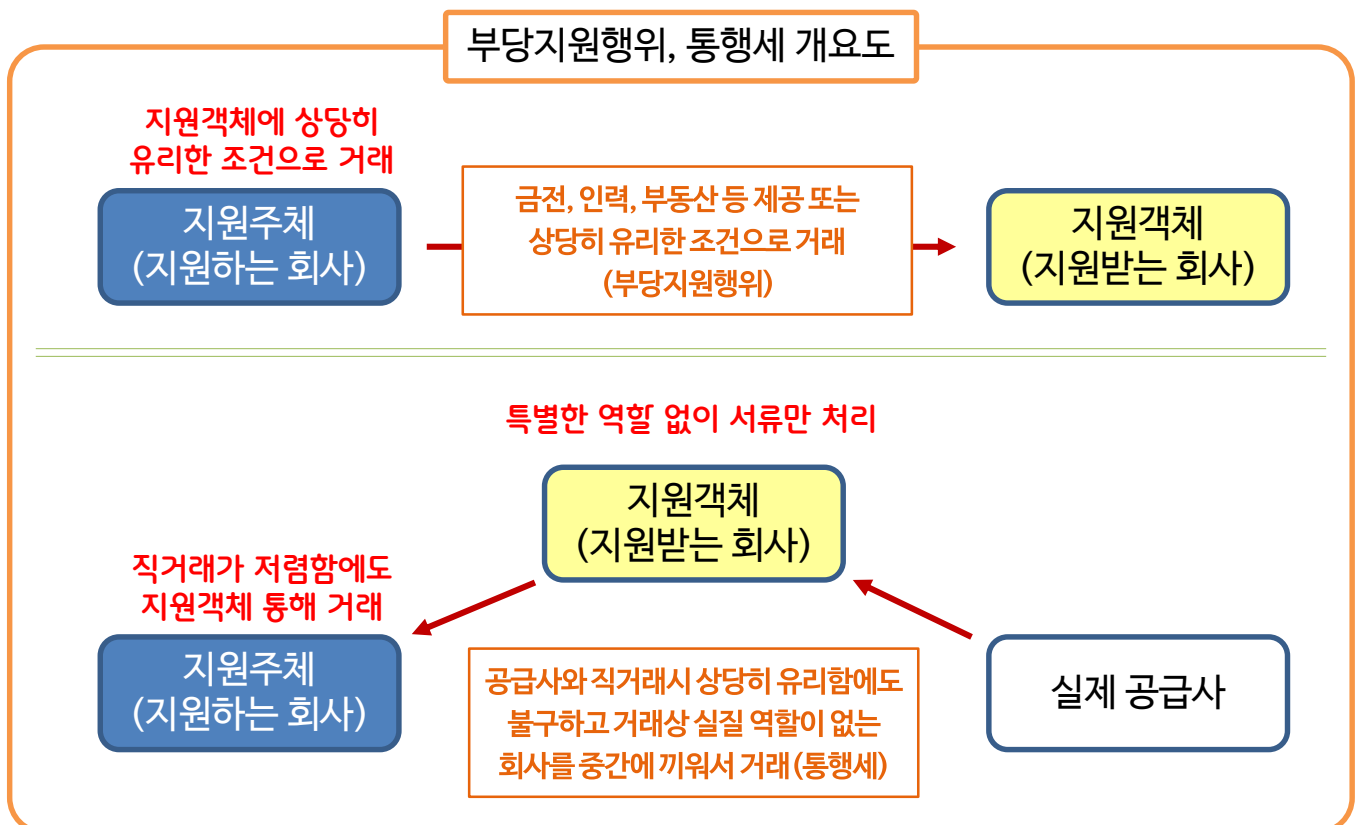
1-3

부당지원행위·통행세 금지: 해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 ▶ ▶ **[부당지원행위등]:** 공정거래법 제45조에 제1항 제9호 각목에 규정된 공정 거래 저해 우려 행위로, 부당지원행위(가목), 통행세 행위(나목)으로 구성
 가.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통행세) 타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 ▶ **위반 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은 지원받는 회사도 제재 대상)**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1-3

부당지원행위·통행세 금지: 제재 사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정위] 기업집단대방건설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25.02.25.)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주)의 5개 시행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

〈이 사건 부당지원 행위 구조도〉



〈이 사건 동일인(기업총수) 부당지원 행위 지시 문서〉

2. 시행내역 (회장님 지시) 내포1,2차를 대방산업개발 계열사 5개사로 토지전매 시행
(표1) 충남내포1,2차 사업주체 변경

현장	사업주체	
	변경전	변경후
충남내포1차(RM9블록)	대방건설(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3개사(A,B,C)
충남내포2차(RH5-1블록)	대방주택(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3개사(C,D,E)

결재 신청서

날 짜	2018. 12. 04.	결	담 당	부서장	비서실
법인명	대방건설	재	담 당	담 당	담 당
부서명	자금부				

순서	내용	지시사항
1	주주 대우금 상환 건 7건	주주대우금 전액 보고 (기 백담)
2	(대방건설) 2018년 11월 자금 종합 계획 제출 보고(2018.11.25보고)	동원3차 대방주택개발 사업행 진행보고

1-4

특수관계 부당이익 제공 금지: 해설

공정거래법 제47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 ▶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공시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또는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 일명 ‘사익편취 행위’라고도 함
 - ① 정상거래 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타 사업자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 ▶ **위반 시 제재(과징금은 지원받은 자 또는 회사도 제재)**
 - 행정제재:시정조치(행위중지,시정명령사실 공표 등),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 **예외 사유(합리적 고려, 타 사업자 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시)**
 - 기업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거래
 - 가.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른 자와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거래
 - 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른 자와 거래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1-4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제재 사례

공정거래법 제47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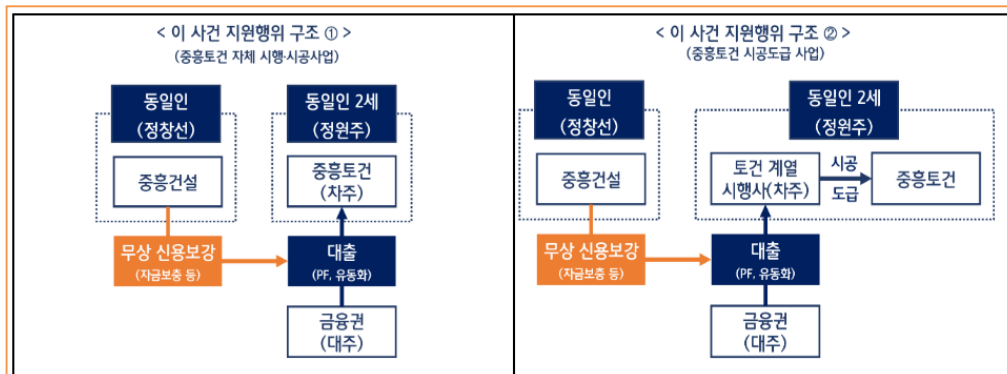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정위] 기업집단「중흥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25.06.10.)

동일인 2세 소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개발사업에서 중흥건설이 각 시행사 PF·유동화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지원주체 중흥건설 고발

- 중흥토건은 경영권 승계 목적 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 사건 무상 신용보강 행위 구조도〉



〈중흥건설 내부 의사결정 자료 발췌〉

2. 시공실적	
중흥건설	3천억원대 매출을 지속적/반복적 유지
중흥토건	주력기업. 매출 집중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영업부 협의하에 작성

-> 가급적 시공사는 중흥토건, 시행사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매출로 인식
-> 관급/사급공사는 예상매출액 및 원가산정하여 예측치로 입력
-> 시공사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대책 수립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비과세 유지

연도별 일정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초과시 조정



02

핵심 하도급법

- 2-1 하도급법 기본
- 2-2 서면발급의무·부당특약 설정 금지
- 2-3 부당 위탁취소·반품·감액 금지
- 2-4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
- 2-5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2-1

하도급법 기본: 해설

하도급법 제2조 외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Part.3.***p~***p참조

- ▶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생산활동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거래 방식**
 - (적용대상) 〈원사업자〉대기업 →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 ** 하도급대금지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적용
- ▶ ▶ **위반 시 제재**
 - 행정제재: 시정조치(하도급대금 지급, 행위중지, 특약 삭제·수정, 재발방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형벌: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대부분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 3억원 이하 벌금(보복 조치 등), 1.5억원 이하 벌금(탈법행위 등)
 - 징벌적 손해배상: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에 대하여 최대 3배, 5배 한도 배상책임 부담 가능
 - ① 최대 3배 배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위탁취소·반품·감액·보복조치 등
 - ② 최대 5배 배상: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 하도급 벌점부과: 법 위반 시 부과. 3년간 누적 벌점에 따라 공공입찰제한 등 가능
 - ① 누적벌점 5점 이상: 공공입찰 참가제한 처분
 - ② 누적벌점 10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2-2

서면발급의무·부당특약 금지: 해설

하도급법 제3조 / 제3조의4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Part3. ***p ~ ***p 참조

- ▶ ▶ **[서면발급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법정 기재사항**
 - 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③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목적물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④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등”)의 내용
 - ⑤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⑥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⑦ 하도급대금(선급금 포함) 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⑧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제공하는 경우 한정)
 - **서면의 ‘발급’**: 하도급법상 서면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것은, 법정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된 서면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양 당사자 기명날인이 모두 완료된 것을 의미함

- ▶ ▶ **[부당특약 설정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문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 ** 특약 실제 실행·수급사업자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특약은 설정만으로도 위법
 - **효력 무효**: 법 개정으로 인해 부당특약의 시효상, 계약상 효력 무효화(‘25.10.02. 이후)
 - **유보금 특약**: 대금 일부의 지급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의 한 유형에 해당

2-2

서면발급의무·부당특약 금지: 제재 사례

하도급법 제3조 / 제3조의4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2-1.***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정위] (주)위비스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제재(25.04.04.)

코로나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 (주)서연이화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 제재(25.06.30.)

- 1) 금형 제조 위탁시 하도급계약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 ~ 최대 3,058일)에 발급
- 2) 하도급계약에 아래와 같은 부당한 특약(수급사업자 권리 제한 계약조건)을 설정

제 7 조 : 검수 및 납품

- 1)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기술자 입회 아래 중간검사를 행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2)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갑"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갑"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갑"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조 :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

- 1) 제품 설계를 함에 있어 "갑"이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을"은 그 제품 사용 및 판매가 여하한 특허권 및 기타 공업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을"은 특허권 및 기타 공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 지체 배상금

- 1)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 /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 2) "을"의 납기 지연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항의 지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을"은 이유없이 "갑"의 적합한 요구에 따라 이의 전액을 배상한다.
- 3) 다음 사유로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전 1)항 및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문서에 의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
 - 나)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

2-3

부당위탁취소·반품·감액 금지: 해설

하도급법 제8조 / 제10조 / 제11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Part3. ***p~***p참조

- ▶ ▶ **[부당위탁취소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임의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위탁업무(하도급계약)를 취소, 수령거부할 수 없음
 - ‘임의로’의 의미: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
 - ** 하도급계약의 취소는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 ▶ ▶ **[부당반품 금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목적물 등을 반품할 수 없음
 - **정당한 반품은 가능:** 납품된 목적물이 상호 합의된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품 후 재납품 요청 가능. 단, 검사 및 반품 절차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진행 필요
- ▶ ▶ **[부당감액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하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는 감액 가능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위탁시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 상호 단가 인하 합의 후에,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감액하는 행위
 - ③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④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에 대한 대가를 과도하게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⑥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관리비,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행위

2-3

부당위탁취소·반품·감액 금지: 제재 사례

하도급법 제8조 / 제10조 / 제11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Part.3.***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주]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주)의 부당한 반품행위 제재('22.03.23.)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

[공정위] 영화테크(주)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 제재('25.04.28.)

2022. 5. 23. 영화테크(주)는 수급사업자에게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하였으나, 2022. 12.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

[공정위] (주)위비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제재('25. 04.04.)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갑자기 원단을 변경하고 기존 재고 원단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거부

[공정위] (주)에이치티엠의 부당감액 행위 제재('25. 05.27.)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해당기간(2020. 5월 ~ 2022.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 상당

2-4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 해설

하도급법 제12조의3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3. ***p~***p참조

-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구 가능
 - **기술자료 요구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아래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비밀유지 계약의 체결:**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아래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③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⑥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 ⑦ 기술자료의 반환 · 폐기 방법 및 일자
- ▶ ▶ **[기술자료 유용 금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위 포함:** 기술자료 유용금지 규정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 유용 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2-4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 제재 사례

하도급법 제12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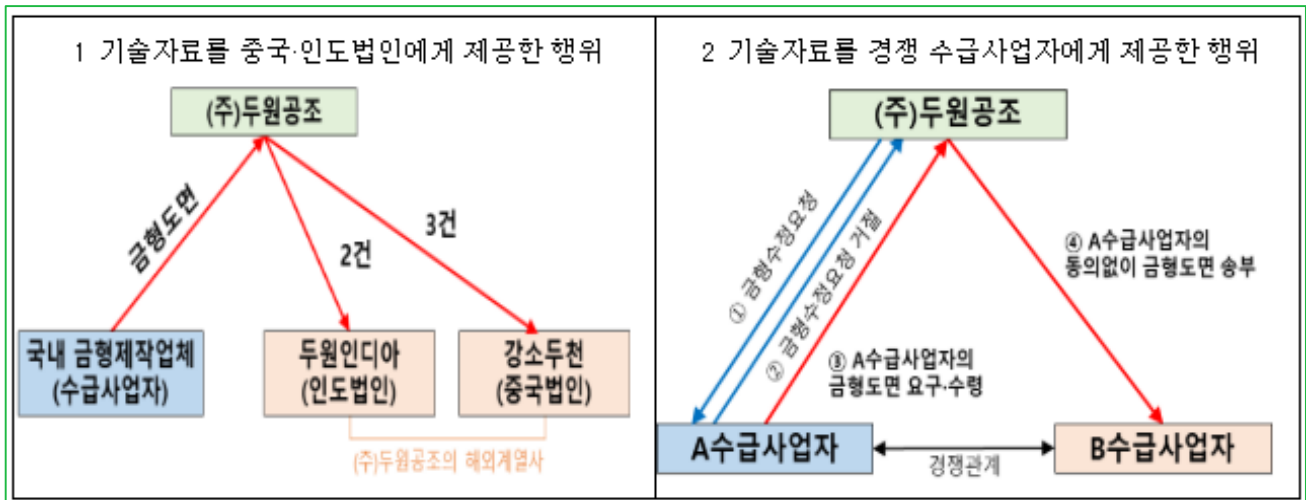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Part3. ***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정위] (주)두원공조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25.06.05.)

- 1)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작 전 승인목적으로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2)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또한, 금형도면을 제공받으면서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도 미체결
- 3) (기술자료 유용행위) 해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자신의 해외 계열사에 제공

《이 사건 기술유용행위 설명도》



2-5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해설

하도급법 제6조 / 제13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 Part.3. ***p~***p 참조

- ▶ ▶ **[기한 내 하도급대금 등 지급]**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 대금(선급금 포함)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
 - **법정 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미지급 대금에 대해 지체 1일당 연 15.5%의 지연이자 부과
 - **중견기업에 적용:** 대금 지급과 관련된 하도급법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뿐 아니라,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적용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발주자로에게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금지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금을 공탁하여야 함

15/60일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영업일 기준 아님)

2-5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제재 사례

하도급법 제6조 / 제13조

상세내용 회사자율준수편람Part.3. ***p~***p참조

[클릭 시 원문자료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정위] (주)이음엘엔디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25.02.10.)

(주)이음엘엔디가 오피스텔 공사 발주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26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

[공정위] 중아건설(주)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 제재('25.02.17.)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결정

[공정위] 성지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25.03.26.)

지식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한 후,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주)에 시정명령

[공정위] (주)서연이화의 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 제재('25.07.01.)

(주)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66억원 및 어음 대체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 0.54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03

CP 제보·신고

3-1 CP 제보·신고 개요

3-2 '25년 CP 제보·신고 시스템 개편

3-1

CP 제보·신고: 개요

전사 윤리강령 제4장

상세내용 전사 윤리강령 제4장. ***p ~ ***p 참조

- ▶ ▶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CP 위반, 부정·부패 등 법규·사규 위반 등 부당 행위 확인 시 사내 담당부서에 제보 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상시 운영 중
- **제보 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내부 시스템, 전화, FAX 등 통해 제한 없이 제보 가능 (익명, 기명 선택 가능)
 - **제보처리:** 윤리강령, 감사규정 내 제보 처리 관련 내용에 따라 진행 (경영진단팀)
 - **제보자 보호:**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
 - ①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의 기밀 취급
 - ② 익명의 신고를 허용
 - ③ 제보로 인한 제보자의 불이익 방지
 - ④ 제보자에 대한 조언

회사 제보운영 개요

01 제보 유형

- 한화시스템(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시나 참여, 이를 묵인하는 행위
- 임직원의 이종 취업 사례
- 임직원의 공급횡령 및 수뢰 사실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기타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비상장 거래업체 부당 지분 참여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인권관련 고충 및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임직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제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02 제보 운영

준법/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제보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사항, 제보자의 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사실 확인과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가급적 제보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03 연락처

-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3F 한화시스템 경영진단팀
- 이메일 ethics.hsc@hanwha.com
 - 팩스 0504.338.7175 (모바일팩스)
 - 전화 02.729.4802

3-2

CP 제보·신고: 홈페이지 통한 직접 신고 가능

제보운영 페이지 (<https://www.hanwhasystems.com/kr/company/report.do>)

상세내용 전사윤리강령제4장.***p~***p참조

- ▶ ▶ [홈페이지 제보 시스템] 2025년 홈페이지 제보운영 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누구나 언제나 제한없이 홈페이지 통해 직접 제보·신고 가능
- 페이지 위치: 회사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Governance → 제보운영

제보하기

• 제보를 위해 아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실명

익명

신고 내용 작성하기

• 필수 입력 항목

제보자 정보

제보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회신방법 *

*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회신 불필요

* 제보 진행상황 및 사실 파악을 위해 선택하신 회신방법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제보대상 정보

제보대상 *

☒ 부서 ☐ 직원 ☐ 임원

제보 대상자

부서/업무

End of document

- 발행부서: 한화시스템(주) 컴플라이언스팀
- 최초 제정: '25.07.

※ 본 자율준수 편람의 무단 복제·배포·수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본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 (jangsw@hanwha.com/02-729-4929)앞으로 문의 바랍니다.